

# 주택소방시설설치 협조 안내문

## □ 근거법령

### ○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」

#### 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

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.)

### ○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

제5조(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)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.

1. 소화기구 : 세대별,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
2. 단독경보형감지기 : 구획된 실(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, 거실,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)마다 설치,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.

## □ 주택소방시설의 종류

### ○ 단독경보형 감지기

-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토록 경보를 울리는 시설로 별도 전기 등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시설



- **경보음량**(85dB 이상), **건전지**(10년 이상 사용)
- **설치방법**
  - 기판을 천장에 볼트로 고정하고, 감지부를 결합하면 됨

### ○ 소화기

- 화재진화시 능력단위에 해당되는 소화효과를 발생



- 적응성 (A: 일반, B:유류, C:전기)  
- 능력단위 (숫자로 표기)

- 수동식 ABC소화기는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가장 간단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
- 분말소화약제를 사용 유류, 전기, 화학약품의 화재는 물론 일반화재에도 효과가 있음

## □ 주택소방시설 설치방법

- ▶ 『건축법』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
  -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등
- ▶ 『건축법』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
  -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
※ 구획된 모든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
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



## □ 주택의 종류 및 기준(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)

용도별 건축물	세분류	구체적 기준
단독주택	가. 단독주택	-
	나. 다중주택	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(실별 취사시설 설치 불가) ③ 연면적 330㎡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
	다. 다가구주택	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(지하층을 제외한다)가 3개 층 이하일 것.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(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)의 합계가 660㎡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
	라. 공관	
공동주택	가. 아파트	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
	나. 연립주택	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(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) 합계가 660㎡를 초과하고,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
	다. 다세대 주택	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(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) 합계가 660㎡ 이하이고,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
	라. 기숙사	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,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